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5. 6. 9.(월) 09:00 ~ 7. 8.(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및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5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기업은 별도 문의
- 사업내용 :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

▶ (노동시간 단축 실시) 3개 유형 중 노사 합의하여 택일

①주4.5일제 ②자율단축제 ③격주4일제

*주4.5일제: 주5일 근무형태 유지하되, 1일(특정요일) 근로시간 단축하여 총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
(예시) 월~목 8시간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

*자율단축제: 주5일 근무형태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
(예시) 월~금, 7시간 근무 / 월수금 8시간 근무, 화목 6시간 근무

*격주4일제: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근무 시행
(예시) 1주차: 월~금 8시간 근무, 2주차: 월~목 8시간 근무

▶ (효과성 분석) 참여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정책 성과분석

-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 컨설팅 등 지원

- ① 장려금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지원(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 ②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기업당 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2

신청 자격 (아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①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¹⁾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²⁾ 단축예정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사업 도입을 통해 최종 주35~36시간 근무시간 단축 예정인 기업

구분	대상	내용	예시
1	전직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 이상 단축예정인 기업	예) 40시간→35~36시간
2	전직원	최근 1년 이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이 2~5시간 이상 추가 단축 예정인 기업	예) 38시간→33~36시간 예) 35시간→30~33시간
3	일부 직원	전 직원 참여 불가로 일부 직원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 이상 단축예정인 기업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본사, 지사, 지점, 공장 등 사업장 단위로만 참여 인정. 같은 사업장 내 전직원 실시 필수. 직 무별, 라인별 근로시간 단축 불가	예) 본사 타지역 경기도내 A지 사, B지사 있는 경우, A지사 전 직원 단축시 참여 가능 예) 생산, 사무, 영업직무 중 사무직만 단축하는 경우 참여 불가

- ③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
 -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제출 필수
- ④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함

※ 최근 3개월의 전자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

□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연장근로가 월 평균 20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정부 지원사업 중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근로자(고용노동부 워라밸장려금,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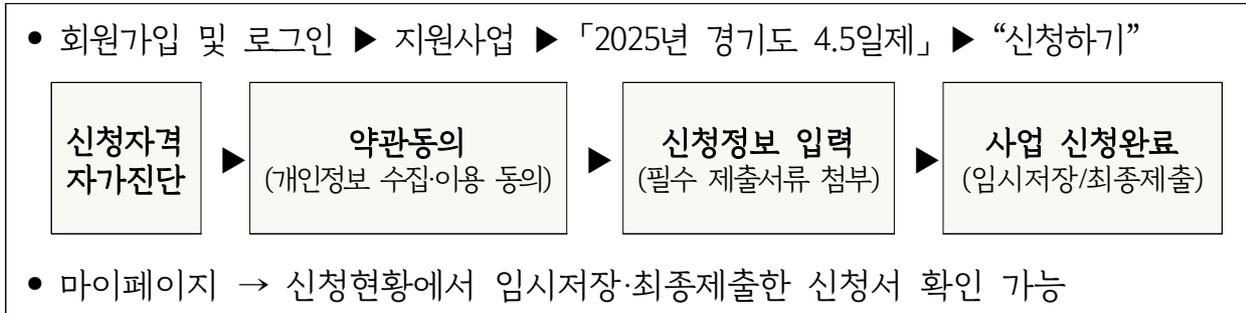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명시한 일하는 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6. 9.(월) 09:00 ~ 7. 8.(화) 18:00 까지 ※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페이지: 온라인 접수시스템(방문 접수 및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PC/모바일 가능
- 신청절차:



- PC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 “신청정보 입력” 단계에서 회원정보가 자동입력되므로 신청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청 전에 회원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 잡아바 어플라이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하기”에서 수정 가능
 - ※ 회원정보 수정내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자동입력이 안되는 경우 Ctrl+F5(윈도우) 또는 Command+R(MacOS)을 눌러 브라우저 캐시를 갱신(새로고침)
 - 잡아바 어플라이 이용 문의 ☎031-270-9669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시 신청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임시저장 기능 이용 권고)
 - 접수시스템 상 7.8(화) 18시까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있게 신청 권고

4

제출 서류

구분	용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신청자격 확인	① 4.5일제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중견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정부24발급) ④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양식2)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3) ⑦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⑧ 회사소개서(양식4)
	직원 명수 확인 및 임금삭감 여부 확인	⑨ 직전 3개월 출퇴근 관리 기록(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 ※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양식7) ⑩ 직전 3개월 직원명부 및 급여대장 ⑪ '25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⑫ 사업참여 제외대상 근로자 명단(양식8)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발급))
	법위반 사실 확인	⑬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5) ⑭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양식6)
	취업규칙	⑮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선택 제출	일부 사업장 적용 확인	⑯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시에만 제출) ※ 전체사업장 외 경기도 내 사업장 또는 지사만 신청할 경우
	가점 여부 판단	⑰ 각종 우수 및 강소기업 인증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당시에만 제출) 경기도 도지사 표창,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예비 유니콘 기업, 무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 기타 중앙부처 인증 또는 표창, 기타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
	근태관리시스템 신규도입 기업	⑱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확약서(양식7)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5년 6월 이후 발급분 제출

5

심사 방법

○ 서류 검증 절차



○ 선정방법: 정량평가(서류심사) 및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및 평가
 - 심사방법: 서류심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평가 및 배점: 총점 100점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총점60점미만은 선정 제외
- 선정 및 결과 통보
 - 정량·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 선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 미선정된 기업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대조군 및 차년도 사업대상 후보로 별도 관리 예정

6 장려금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2개월 단위로 지급)



- 지급 방법: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
- 지급 금액: 단축시간 별 차등 지급

연번	구분	금액	비고
1	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	인당 260,000원	
2	주당 소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	인당 210,000원	
3	주당 소정근로시간 3시간 단축	인당 160,000원	
4	주당 소정근로시간 2시간 단축	인당 110,000원	

7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기간: 2025년 8월~12월(예정)
- 개요



-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
 - 내용: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법·제도 등 근로조건 전반의 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진행
-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
 - 내용: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효과적인 생산활동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진행
 - 분야: 업무개선지원(일하는 방식, 임금체계, 성과관리 개선 등), 공정개선지원(생산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 근로시간 단축 지원단
 - 내용: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의견 수렴 및 제도가 기업에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
-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 ① 기존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또는 모바일 GPS 기능을(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 관리, 연차 및 유연근무제 적용 기능 등)을 포함한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 ② 기존 사용하는 근태관리 시스템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시스템 사용 비용 지원

8 | 기타 문의

- 신청 전 모집 공고문 및 FAQ를 반드시 확인
- 추가 문의사항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연락
 - 운영시간: 평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18시(점심시간 11:30~12:30분)
- 접수기간 중 문의량 증가로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잡아바 어플라이
→ 경기도 4.5일제 → Q&A탭(1:1문의)에 문의